

건설분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2001. 10. 24

건 설 교 통 부

건설분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1997. 7. 8 제정
1997. 8. 6 개정
1998. 2. 25 개정
1999. 12. 31 개정
2000. 3. 31, 6.22, 12.13 개정
2001. 5. 26 개정
2001. 10.2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분야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설분야의 인력난 완화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건설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기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는 산업체 유관 공공단체의 장은 대한건설협회(이하“건설협회”라 한다) 회장으로 한다.

제3조(연수대상공사 및 배정기준) 이 지침에 의한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하“연수생”이라한다)이 연수를 받는 대상공사와 연수생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등) ①건설분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협회에 외국건설 인력연수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 2 장 연수업체

제5조(연수업체의 자격요건) 연수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연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2. 연수생이 생활할 수 있는 숙박시설 등을 갖춘 업체
3. 연수생 이탈방지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건설협회 회장이 인정하는 업체

제6조(연수업체의 선정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연수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건설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이를 연수업체에 통보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업체에 대한 교육) 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 대표 또는 연수생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수관리비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생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연수업체로부터 연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다.

②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수당의 체불 등에 대비하여 연수업체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관리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예치, 귀속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9조(연수업체의 준수사항) 연수업체는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일정기간 이상의 현장훈련 실시
2. 연수생에 대한 년 1회 건강검진 실시
3. 월 1회 이상 소양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내용의 기록
4. 연수생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연수수당 직접지급,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의료보험 적용
5. 연수생의 무단이탈,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다음 각목의 대책수립 및 관리활동
가. 연수생을 집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독립된 숙소설치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나. 외출등 공사현장 및 숙소이탈시 현장소장의 확인
다. 무단이탈자 발생시 관계기관의 신고 및 사후관리대책 수립
라. 기타 연수생의 풍기문란행위 등의 통제
6. 연수대상 시설중 관제탑, 종합정보센터, 종합지령실등 보안이 필요한 주요 시설에 대한 연수생의 활용배제 등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활동
7. 건설협회 회장이 시행하는 연수생 지원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8. 기타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장 연 수 생

제10조(연수생의 자격) 연수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20세이상 45세이하로 신체건강한 자
2. 범죄사실이 없는 자
3. 연수업체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시험 및 건강검진에 합격한 자

제11조(연수생의 선발)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가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를 연수생으로 선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업체가 직접 연수생을 선발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협회 회장이 선발하여 연수업체에 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연수업체의 관계자를 연수생의 선발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수생의 교육등) ①송출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연수생에 대하여 입국전에 한국어 기본생활용어,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령, 적응훈련 등 연수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10일이상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송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적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③송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검정방법 등에 대하여 건설협회 회장과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④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생이 입국한 경우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시킨 후 연수업체에 인도하여야 한다.

⑤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생 입국즉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수조건) ①연수생의 연수시간 및 연수수당 등 연수조건은 연수업체와 연수생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되, 연수생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연수수당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생에게 연수수당의 일정비율을 정기적금에 가입토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업체는 연수생의 정기적금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송출국가의 선정등

제14조(송출국가의 선정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생 송출국가를 선정하고 국가별 연수인원을 배정한다. 그 선정 등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연수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국가의 선정과 국가별 연수인원의 배정을 추천할 수 있으며, 건설협회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송출기관의 선정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송출국가별로 연수생 송출기관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선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연수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의 선정을 추천할 수 있으며 건설협회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및 선정의 변경 또는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16조(송출기관에 대한 점검·평가) 건설협회 회장은 송출기관별로 연수생 이탈율, 부적격 연수생 송출실적, 송출수수료 과다징수 여부, 연수생 입국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등급을 정하여 송출기관별 인원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송출수수료등) ①송출기관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 범위내에서 훈련비용, 입국교통비등 연수생의 모집·선발·교육 및 입국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수생으로부터 송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건설협회 회장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출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건설협회와 송출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송출기관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출수수료의 징수, 계약이행보증금 예치, 반환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제18조(송출기관의 준수사항) 송출기관은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 금액 내에서의 송출수수료 징수

2. 건설협회 또는 연수업체의 연수생 추천요청시 일정자격을 갖춘 자의 모집
3. 연수생 모집시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 공고문안을 사용하여 공개 모집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연수생의 교육실시등
5. 연수생의 사후관리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6. 기타 연수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5 장 외국건설인력연수단

제19조(연수단의 설치) ①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분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협회 내에 외국건설인력연수단(이하“연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연수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협회 회장이 정한다.

③연수단의 업무 및 회계는 대한건설협회의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연수단에 대한 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연수단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21조(계약의 체결) 건설협회, 송출기관, 연수업체, 연수생은 연수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을 당사자간에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협회 회장은 표준계약을 제정하여 계약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건설협회의 점검 및 관리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생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수생의 입출국 및 이동사항
2. 연수업체 및 연수생의 현황과 변동사항
3. 연수업체의 연수실태
4. 연수업체의 부당행위 실태
5. 연수생의 불법행위 및 사고의 예방지도 및 점검
6.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관리활동

7. 연수생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 등의 가입실태
8. 연수생의 임금체불 예방지도 및 점검
9. 연수생의 건강진단 지도 및 점검
10. 기타 건설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건설협회 회장은 제1항의 점검 및 관리를 위해 연수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협회 회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관리현황을 매 익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연수사업에 대한 감독 및 제재) ①건설협회 회장은 연수업체, 송출기관 및 연수생 등이 본 지침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연수계약 취소 및 선정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설협회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세부운영요령의 제정·운용등) ①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분야 외국인산업기술 연수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운영요령을 제정·운용한다.

②건설협회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요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수대상공사 및 연수생 배정기준

1. 연수대상공사 및 연수인원

가. 연수대상공사

- (1) 사업비 300억원이상 SOC건설공사
- (2)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근지원 건립 주택 건설공사
- (3)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SOC건설공사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공사에 한함)

나. 대상공사별 연수인원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의 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설분양의 총도입규모 범위 내에서 당해 대상공사의 발주상황·인력수급 사정 등을 감안하여 건설협회장이 결정하되, 그 결과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수업체별 연수생배정기준

가. 연수업체별 연수생배정은 연수업체별로 연수인원의 신청을 받아 배정한다.

나. 다만, 연수업체가 신청한 연수인원이 위 제1호에 의한 연수대상 공사별 연수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SOC건설공사에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